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9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임이자·김형동·정희용

박충권 • 유용원 • 최수진

김소희 • 이철규 • 구자근

신성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 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을 그 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 내용, 입지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영향을 추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 대상과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등지원을 통해 평가가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이행 관리 등을 위한 준용규정 및 벌금·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함(관련 안 제2조제7호, 제7조의2, 제1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4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의2, 제53조제1항, 제74조제1항제1호의3 및 제2항제3호의2, 제76조제1항제4호, 제76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또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유사한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 함(안 제32조 및 제44조제3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평가 분류"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하기 전에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과 입지 특성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영향을 추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 및 협의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분류) 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 중점평가 대상: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입지 특성, 규모·내용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대상 지역 주변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2. 간이평가 대상: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입지 특성, 규모·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상 지역 주변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분류를 위한 구체적인 추정기법 등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평가 분류 여부 및 분류 내용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 분류를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은 평가 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 분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평가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분류 적용대상,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제11조제1항제4호"를 "제11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장제4절(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평가 분류 결정에 따른 차등화된 절차 등

제21조의2(중점평가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등) ① 중점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해당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 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전략환경영 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를 실시하면서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할 때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중점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의3(간이평가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절차 생략 등) ① 간이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 2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등을 생략할수 있다. 이 경우 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간이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평가 분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평가 분류 여부 및 분류 내용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 분류를 결정하려는 승인기관장등은 평가 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 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①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분류 적용대상, 적용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

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에 제4절의2(제41조의2, 제41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2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평가 분류 결정에 따른 차등화된 절차 등

- 제41조의2(중점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등) ① 중점 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제25조부터 제27조 까지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를 실시하면서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중점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1조의3(간이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절차 생략 등) ① 간이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 사업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를 준용하고, 환경보전방안의 이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 ④ 사업자는 승인기관장등이 제1항에 따라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평가 분류 결정 요청 등 다시 환 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 분류 등) ① 승인기 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간이평가 대상으로 평 가 분류할 수 있다.
 - ② 간이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제4 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한다.
 -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간이평가 대상 결정에 관

하여는 제2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고,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하며, 환경보전방안 이행의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⑤ 사업자는 승인기관장등이 제1항에 따라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평가 분류 결정 요청 등 다시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략할 수 있다"를 "다시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 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44조제3항제1호 중 "경과하지 아니한"을 "경과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을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환경부장관"으로, "경과하지 아니한"을 "경과한"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평가서 초안 및"을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제21조의3, 제33조, 제41조의3, 제43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등"로 한다.

제74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제43 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중지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4조제2항제3호 중 "(제49조제2항에 따라"를 "(제41조의3제3항 및 제43조의2제4항, 제4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 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제7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제4항제1호의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4항부터 제6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5항부터 제7항,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계획이나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협의 요청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협의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평가 분류"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기 전에 계획이나 사
	업의 내용과 입지 특성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영향을
	추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차
	등화된 평가 및 협의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u>것을 말한다.</u>
<u><신 설></u>	제7조의2(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분류) 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
	<u>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u>
	<u>할 수 있다.</u>
	1. 중점평가 대상: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입지 특성, 규모
	•내용 등으로 인해 자연환
	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대상 지역 주변의 생활환경
	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
	으로 추정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2. 간이평가 대상: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입지 특성, 규모
	·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
	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상 지
	역 주변의 생활환경에 미치
	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추
	<u>정되는 경우</u>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분류를
	위한 구체적인 추정기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
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 ①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	
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	
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	
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	
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	
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	
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	

현 행	개 정 안
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평가 분류 여부 및 분류 내용
<u>4.</u> (생 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
	분류를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분류를 결정하기 전
	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
	<u>다.</u>
<u><신 설></u>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평가 분류의 변
	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신 설></u>	⑥ 제1항에 따라 평가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분
	류 적용대상, 시행시기 등 구체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
<u>④</u> ~ ⑥ (생 략)	<u>⑦</u> ~ <u>⑨</u>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

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 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혂

행

② (생략)

<신 설>

<신 설>

/ ∦	성	안

가)	1	 			
		 <u>제</u>	11조	제1항	제
<u>5ই</u> -		 			

② (현행과 같음)

 제4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평가 분류 결정에 따른 차등화된

 절차 등

제21조의2(중점평가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등) ① 중점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해당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를 실시하면서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등의 의견수렴을 할 때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환경부장관은 중점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
	<u>을 할 수 있다.</u>
<u> <신 설></u>	제21조의3(간이평가 대상 전략환
	경영향평가에 대한 절차 생략
	등) ① 간이평가 대상으로 결정
	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
	의 장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
	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
	의요청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보
	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
	은 간이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평가
	분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
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	정) ①
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혂 행 개 안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평가 분류 여부 및 분류 내용 <신 설>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 <u><신 설></u> 분류를 결정하려는 승인기관장 등은 평가 분류를 결정하기 전 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 <신 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평가 분류를 변 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분류 적용대상, 적용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

혂 행 개 정 아 로 정한다. ⑤ ~ ⑧ (생 략) ⑧ ~ ① (현행 제5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 제32조(재협의) ① -----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 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 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

1.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 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 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

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

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u>한 경우</u>
<u><신 설></u>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
	인 또는 확정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
	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u>2.</u> ~ <u>4.</u> (생 략)	<u>4.</u> ~ <u>6.</u>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②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	관장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
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
	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
	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
	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	<u><삭 제></u>
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	
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	<u><삭 제></u>
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현 행	개 정 안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	, <u> </u>
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	
<u>지 아니한 경우</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4절의2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평가 분류 결정에 따른 차등화된
	<u>절차 등</u>
<u><신 설></u>	제41조의2(중점평가 대상 환경영
	<u>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등) ①</u>
	중점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을 하려는 사업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
	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를 실
	시하면서 제25조에 따른 환경영
	<u>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u>
	등의 의견수렴을 할 때 공청회
	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중점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원
	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환경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u>수 있다.</u>
<u><신 설></u>	제41조의3(간이평가 대상 환경영

행 정 혂 개 안 향평가에 대한 절차 생략 등) ① 간이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 려는 사업자는 제25조부터 제27 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 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 의 요청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 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후단 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 거나 검토할 때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 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 ·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30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 조를 준용하고, 환경보전방안의 이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 35조, 제37조부터 4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 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승인기관장등이 제

현 행	개 정 안
	1항에 따라 승인등을 하거나 확
	정한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려
	는 경우 평가 분류 결정 요청
	등 다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4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 분류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
	향평가 대상 사업을 간이평가
	대상으로 평가 분류할 수 있다.
	② 간이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는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
	청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
	우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
	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 후단
	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
	거나 검토할 때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
	향평가의 간이평가 대상 결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부터 제6
	항까지를 준용하고, 환경보전방

혂 행 개 정 안 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 •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하며, 환경보전방 안 이행의 관리 · 감독 등에 관 하여는 제48조 및 49조를 준용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⑤ 사업자는 승인기관장등이 제 1항에 따라 승인등을 하거나 확 정한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려 는 경우 평가 분류 결정 요청 등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 ②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 ② (생략) (현행과 같음)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 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 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 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해 설> 당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 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 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1
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	
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u> 경과한</u>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u>대상사</u>	2대상사
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	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환경
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	<u> 부장관</u>
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u>경과한</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	①
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	
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	
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혂 행 개 정 안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 1. ---- 평가준비서 안 및 평가서 및 평가서 초안,----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4. 제21조의3, 제33조 및 제41조 의3, 제43조의2에 따른 환경보 전방안 등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74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2. (생략) 1. · 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제4 항,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준 용되는 제47조제3항을 위반하 여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에 3. ----(제41조의3제

현 행
<u>따라</u>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
한 자
<u><신 설></u>

4. ~ 8. (생략)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3. (생략)

<u><신 설></u>

- ② ~ ③ (생 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개 정 안

- <u>3항 및 제43조의2제4항, 제49</u> <u>조제2항에 따라</u>-----
- 3의2.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1항 및 제4 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 보전방안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 4. ~ 8. (현행과 같음)
- 제76조(과태료) ① -----
 - _____

---.

- 1.~ 3. (현행과 같음)
- 4.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 ③ (현행과 같음)
- 4 -----

현 행	개 정 안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	1
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	
어 두지 <u>아니한 자</u>	<u>아니한 자(제41조의</u>
	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	2
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	
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u>아니한 자(제41</u> 조의3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u> 함한다)</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	4
업의 착공・준공・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u>아니한 자</u>	<u>아니한 자(제41조의3</u>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	5
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u>아니한 자</u>	아니한 자(제41

현 행	개 정 안
	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생 략)